

발 간 등 록 번 호
11-1352000-001921-10



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

MINISTRY OF HEALTH & WELFARE

청년층





복지서비스는 365일 24시간 활짝 열려있습니다.

이 책은

사회보장위원회 www.ssc.go.kr, 보건복지부 www.mohw.go.kr,

복지로 www.bokjiro.go.kr 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.

이 책자에 수록된 내용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.

※ 단, 이 책에 사용된 이미지는 공공의 목적 이외(상업용·판매용)에는 사용하지할 수 없습니다.



본 책의 내용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
수록된 내용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,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페이지의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CONTENTS

교육지원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01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(드림장학금) | 6 |
| 02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(희망사다리 II 유형) | 7 |
| 03 국가장학금[I , II 유형, 다자녀(세자녀 이상)] | 8 |
| 04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| 9 |
| 05 국가근로장학금 | 10 |
| 06 예술체육 비전장학금 | 11 |
| 07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(희망사다리 I 유형) | 12 |
| 08 인문100년 장학금 | 13 |

교육대출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09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| 14 |
| 10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| 15 |
| 11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 | 16 |

고용지원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12 국민취업지원제도 | 17 |
| 13 국민내일배움카드제 | 18 |
| 14 청년내일저축계좌 | 19 |
| 15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| 20 |
| 16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| 21 |
| 17 창업기숙사 사업 | 22 |
| 18 일학습병행 | 23 |
| 19 해외취업 지원 | 24 |
| 20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취업 지원 서비스 | 27 |

주거지원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21 행복주택 공급 | 28 |
| 22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·신혼부부·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| 30 |
| 23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·신혼부부·청년 등 전세임대 지원 | 32 |
| 24 에너지바우처 | 34 |

주거대출

| | |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25 |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(주택구입 시) | 35 |
| 26 |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(전·월세 보증금 대출 시) | 36 |
| 27 | 주거안정 월세대출(순수 월세 대출 시) | 37 |
| 28 | 일반월세자금보증 | 38 |
| 29 |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| 39 |

생활지원

| | | |
|----|------------------|----|
| 30 | 긴급복지 지원제도 | 40 |
| 31 |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| 42 |
| 32 | 여성긴급전화 1366 | 43 |

건강지원

| | | |
|----|-----------------|----|
| 33 | 국가건강검진제도 | 44 |
| 34 |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| 46 |
| 35 |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| 47 |
| 36 |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(바우처) | 48 |

법률·금융지원

| | | |
|----|---------------|----|
| 37 | 법률구조 제도 | 49 |
| 38 |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 | 51 |
| 39 |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| 52 |
| 40 |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| 54 |

국방

| | | |
|----|--------------|----|
| 41 |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 | 55 |
|----|--------------|----|

사회참여

| | | |
|----|---------|----|
| 42 | 온가족보듬사업 | 56 |
|----|---------|----|

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 (드림장학금)



대상

- 국내 고교 2, 3학년 재학자 중 해외대학 입학에 희망하는 저소득층(신청일 기준 기초 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 성적 우수 학생
- 2025년 2월 또는 2026년 2월 졸업예정자
 - ※ 선발예정인원 30명 내외
(고2 50% 내외, 고3 50% 내외 선발,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5명 이내 선발)
- 학생 온라인 신청자
- 고교 재학 중 직전학기까지 전체학기 이수한 국어, 영어, 수학, 과학, 한국사, 사회, 전문 교과Ⅱ 과목 중 석차 3등급 이내 또는 성취도(학점) A 이상인 과목의 이수단위 합계가 24단위(고3)/12단위(고2) 이상



내용

| 구분 | 지원내용 |
|------------------|---|
| 유학준비생 (국내장학생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원대상 : 신규 장학생으로 선발(서류, 인적성 검사, 면접)된 학생 • 지원내역 : 학업장려비 지원(고2 : 월 50만 원, 고3 : 월 70만 원) • 지원기간 : 선발 익월부터 고교 졸업 시(2월 말)까지 지원 • 지급절차 : 월별 학업보고서 제출 ⇨ 학업 보고서 심사 및 승인 ⇨ 학생계좌로 개별 지급 |
| 유학생 (해외장학생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원대상 : 유학준비생(국내장학생) 중 해외대학에 최종 합격하여 진학이 결정(예정)된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세계 대학 순위 400위(또는 세계 전공 순위 50위) 등 진학 가능 대학에 최종 합격한 경우 유학생 전환 • 지원내역 : 연간 최대 6만 USD(학비+체재비), 항공료 별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세부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참고 • 지원기간 : 입학 학기부터 졸업시까지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|



방법

-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
-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⇨ 장학금 ⇨ 국가우수장학금 ⇨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 (드림장학금)



문의

한국장학재단(☎1599-2290, www.kosaf.go.kr)

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(희망사다리Ⅱ 유형)

대상

-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현재 지원대상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 재학생
※ 일부 전문학사 취득자 지원 가능

| 세부요건 | 세부내용 |
|--------|---|
| 지원대상기업 | 중소·중견기업, 대기업, 비영리기관 |
| 재직경력 | 심사일 기준 2년 이상 재직(단, 현재 중소·중견기업 재직자는 1년 이상) |
| 성적 |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 이상 |

- 우선지원 대상
 - 계속장학생을 우선 지원하고,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규장학생 선발
 - 신규장학생의 경우 아래 항목에 따라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장학생 선발

| 구분 | 연령 | 출신고교 | 재직기관 | 재직기간 |
|----|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배점 | 30점 | 25점 | 40점 | 5점 |

내용

- 중소기업·중견기업 재직자 : 대학교 등록금 전액 지원
- 대기업·비영리기관 재직자 : 등록금 50% 지원
 - ※ (계속장학생) 수혜 횟수 내에서 졸업까지 계속 지원
 - ※ 매학기 지원 자격 충족자에 한하여 지원
 - ※ 의무재직 : 장학금 수혜 후 일정기간 기업에 재직* 의무, 의무 불이행 시 장학금 환수
 - * 학기별 의무재직 이행기간 내 '수혜학기 x 4개월' 간 재직

방법

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

문의

한국장학재단(☎1800-0499, www.kosaf.go.kr)

국가장학금

[I, II 유형, 다자녀(세자녀 이상)]

대상

| 구분 | 지원대상 |
|--------------------|---|
| 국가장학금 I 유형 |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|
| 국가장학금 II 유형 |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 |
| 다자녀 국가장학금 (세자녀 이상) |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, 다자녀(자녀 셋 이상) 가구의 대학생(미혼이며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(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I 유형으로 지원)) |

- ※ I 유형, 다자녀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
- 12학점 이상 이수, B학점(80/100점) 이상 취득
 - 단, 기초·차상위 C학점(70/100점) 이상, 신·편입생, 장애인학생, 자립준비청년 성적 기준 미적용

내용

- I 유형, 다자녀 : 등록금 필수 경비(수업료)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

〈2024년 연간 국가장학금 최대 지원 금액〉 (단위 : 만 원)

| 구분 | 기초·차상위 | 1구간 | 2구간 | 3구간 | 4구간 | 5구간 | 6구간 | 7구간 | 8구간 |
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I 유형 | 전액 | 570 | | 420 | | 350 | | | |
| 다자녀 | 첫째, 둘째 | 전액 | 570 | | 480 | | 450 | | |
| | 셋째 이상 | 등록금 전액 | | | | | | | |

- II 유형 : 참여 대학의 자체 선발 기준(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)에 따라 장학금 차등 지원
- ※ 단,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0구간도 지원 가능

방법

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

문의

한국장학재단(☎1599-2000, www.kosaf.go.kr)

알려드립니다

학자금 지원구간이란?

- 경제적 여건에 따라 학자금지원 범위를 다르게 정하기 위해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, 재산(사회보장정보시스템)*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개인별 지원구간(1~10구간)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.

* 형제·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학생은 형제·자매 수에 따른 인적 공제 적용

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

 대상

- 대통령과학장학금 : 국내 4년제 대학(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(부))에 재학중인 신입생 및 3학년 또는 해외 4년제 대학(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(부))에 입학 예정 및 확정인 신입생
- 국가우수장학금(이공계) : 당해 연도 국내 대학(4년제)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입학예정 (확정) 또는 3학년 재학 중인 자
- 대학원대통령과학장학금: 국내 일반대학원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전공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중인자

 내용

| 구분 | 대통령과학장학금 | 국가우수장학금(이공계) | 대학원대통령과학장학금 |
|----------|---|---|--|
| 지원 내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내장학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장학금(등록금 전액) - 학업장려비 (학기당 250만 원) - 생활비(기초생활수급자 학기당 250만 원) • 해외장학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 5만 USD 내에서 학비, 체재비 지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내장학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장학금(등록금 전액) - 생활비(기초생활수급자 학기당 250만 원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석사과정 장학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월 1.5백만 원 • 박사과정 장학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월 2백만 원 |
| 지원 기간 | 장학생 선정 후 최대 4년 지원(정규8학기) ※ 5년제 학과 최대 10학기 지원 | 장학생 선정 후 최대 4년 지원(정규 8학기) ※ 5년제 학과 최대 10학기 지원 ※ 3학년 선발자는 최대 2년 (정규 4학기) 지원 | 장학생 선정 후 ※ 석사과정은 최대 4학기 ※ 박사과정은 최대 8학기 |
| 계속 지원 기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성적 : 87점 이상/100점 (B+수준) • 최소 이수학점 :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성적: 심사연도 성적 평균 백분위 92점 이상 또는 평점 4.0이상/4.5만점 (3.7이상 /4.3만점) • 최소이수학점 : 연간 최소 6학점(학기당 최소 3학점) |

 대상

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

 문의

한국장학재단(☎1599-2290, www.kosaf.go.kr)

국가근로장학금



대상

사업 참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중, 아래의 성적 및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

- (성적) C0 학점(70/100점) 이상
- (소득)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



내용

매월 근로시간당 장학금 지급

- 시급단가 : 교내근로 9,860원, 교외근로 12,220원
- 최대 근로시간 : 1일 8시간, 1주당 20시간(단, 방학 중 40시간), 1학기당 최대 520시간



방법

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



문의

한국장학재단(☎1599-2290, www.kosaf.go.kr)

알려드립니다

학자금 지원구간이란?

- 경제적 여건에 따라 학자금지원 범위를 다르게 정하기 위해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·재산·부채에 대한 자료(사회보장정보시스템)를 기준으로 산정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개인별 지원구간(1~10구간)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.

자주하는 질문

지원대상(성적 및 소득 기준 적용)에 예외적인 사항은 없나요?

- 신입생, 편입생의 경우,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 또한, 학부모 실·폐업 등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,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의 적용 배제가 가능합니다.

예술체육 비전장학금



대상

국내 4년제 대학의 예술 및 체육계열학과(부) 1,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1학년 '전공 탐색(I, II)유형'과 3학년 '전공확립(I, II)유형'으로 구분하여 지원 대상 선발



내용

| 구분 | | 지원내용 |
|--------|-----|---|
| I 유형 | 등록금 | • 장학생 선정 후 매 학기별 등록금 전액(해당학기 계속지원 기준 충족 시) |
| | 생활비 | • 공통지원 : 학기 당 250만 원 • 기초생활수급자 추가지원 학기 당 250만 원 ※ 장학생으로 확정된 연도의 지원내용 및 금액 적용(소급적용 불가) |
| II 유형 | 등록금 | • 장학생 선정 후 매 학기별 등록금 전액(해당학기 계속지원 기준 충족 시) |
| | 생활비 | • 기초생활수급자 추가지원 학기 당 250만 원 ※ 장학생으로 확정된 연도의 지원내용 및 금액 적용(소급적용 불가) |
| 계속지원기준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성적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등록금 : 직전학기 백분위 90점 이상 또는 평점 3.6점 이상/4.5점 만점 (3.4점 이상/4.3점 만점) - 생활비 : 직전학기 백분위 92점 이상 • 최소이수학점 :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|

※ I·II유형 지원 내용은 2024년도 신규장학생 지원 기준



방법

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



문의

한국장학재단(☎1599-2290, www.kosaf.go.kr)

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(희망사다리 I 유형)



대상

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학부* 재학생

* 일반대 3학년 이상, 전문대 2학년이상. 단, 원격대학(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)은 제외

* 계약학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,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1학년에 한해 지원 가능

- (성적기준)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,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

※ 대학 내 최소 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, 12학점을 기준으로 적용



내용

| 구분 | 지원내용 |
|---------|---|
| 등록금 | 학기당 등록금 전액 |
| 취·창업지원금 | 학기당 200만 원, 단 직무기초교육 미이수자는 해당학기 지원금 반환 조치 |



방법

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



문의

한국장학재단(☎1800-0499, www.kosaf.go.kr)

인문100년 장학금



대상

국내 4년제 대학의 인문사회계열 학과(부) 1,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1학년 '전공탐색 (I, II)유형'과 3학년 '전공확립(I, II)유형'으로 구분하여 지원 대상 선발



내용

| 구분 | | 지원내용 |
|--------|-----|---|
| I 유형 | 등록금 | • 장학생 선정 후 매 학기별 등록금 전액(해당학기 계속지원 기준 충족 시) |
| | 생활비 | • 공통지원 : 학기 당 250만 원 • 기초생활수급자 추가지원 학기 당 250만 원 ※ 장학생으로 확정된 연도의 지원내용 및 금액 적용(소급적용 불가) |
| II유형 | 등록금 | • 장학생 선정 후 매 학기별 등록금 전액(해당학기 계속지원 기준 충족 시) |
| | 생활비 | • 기초생활수급자 추가지원 학기 당 250만 원 ※ 장학생으로 확정된 연도의 지원내용 및 금액 적용(소급적용 불가) |
| 계속지원기준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성적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등록금 : 직전학기 백분위 90점 이상 또는 평점 3.6점 이상/4.5점 만점 (3.4점 이상/4.3점 만점) - 생활비 : 직전학기 백분위 92점 이상 • 최소이수학점 :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|

※ I·II유형 지원 내용은 2024년도 신규장학생 지원 기준



방법

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



문의

한국장학재단(☎1599-2290, www.kosaf.go.kr)

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



대상

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(학점은행제 교육기관, 외국대학 제외)의 학부생, 전문대학의 전문기술석사, 대학원생으로 재학 및 입학·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(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,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)

| 구분 | 학부 | 대학원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대상 | 협약 체결 대학 학부생 | 협약 체결 대학 대학원생 및 전문대학의 전문기술석사 이수 중인 학생 |
| 연령 | 만 35세 이하 ※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 이하 | 만 40세 이하 |
| 성적 | 제한없음 | 제한없음 |
| 이수학점 |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※ 신입생, 장애인은 적용 제외 | 제한없음 |
| 소득 |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※ 다자녀 가구는 소득 무관 |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|



내용

| 구분 | 지원내용 |
|------|---|
| 대출금리 | 1.7%(변동금리) |
| 대출조건 | 등록금 대출(당해학기 소요액 전액), 생활비 대출(학기당 200만 원) ※ 대학원 등록금 대출은 학과·학제별 총한도 범위 내 가능하며,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에 문의 |
| 이자면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초·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의 학생은 재학 중 등록금·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기초, 차상위, 자립준비청년(보호아동포함),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(단, 개시이력 보유 시 제외) ※ 2024년 2학기 이자지원대상 확대 예정 |
| 상환방법 |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('24년 기준 연소득 2,679만 원) 이하인 경우 원리금 상환유예, 초과 시 소득에 따라 의무상환 |



방법

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



문의

한국장학재단(☎1599-2000, www.kosaf.go.kr)

알려드립니다



생활비대출 한도가 확대('23년 350만 원 → '24년 400만 원)되고, 2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이 기초·차상위, 다자녀, 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 학생으로 확대됩니다.
※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(www.kosaf.go.kr)에서 확인하세요.('24.7월~)

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

대상

| 구분 | 지원대상 |
|------|---|
| 대상 | 국내 대학 학부생, 대학원생 및 전문기술석사 이수종인 학생,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 |
| 연령 | 만 55세 이하 |
| 성적 | 직전학기 성적 70점/100점(C학점) 이상 ※ 신입생, 장애인은 적용 제외 |
| 이수학점 |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※ 신입생, 장애인, 대학원생,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는 적용 제외 |
| 소득 | 소득 무관 |
| 신용 |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|

내용

| 구분 | 지원내용 |
|------|--|
| 대출금리 | 1.7%(고정금리) |
| 대출조건 | 등록금 대출(당해학기 소요액 전액), 생활비 대출(학기당 200만 원) ※ 등록금 대출은 학과·학제별 총한도 범위 내 가능하며,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에 문의 ※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는 생활비대출 미지원 |
| 상환방법 |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(최장 20년 내) |

방법

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

문의

한국장학재단(☎1599-2000, www.kosaf.go.kr)

알려드립니다

생활비대출 한도가 확대('23년 350만 원→ '24년 400만 원)되었습니다.

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



대상

-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(180일)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(보호자)의 자녀(대학생)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및 농식품인재 대상학과(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) 대학생
- 직전학기 성적 70점/100점(C학점) 이상, 12학점 이상 이수*한 대학생
 - * 소속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는 대학 학사규정에 의함
 - * 신입생군(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), 장애인인 경우 성적,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
 - * 졸업 학년 학생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

| 순위 | 세부 자격 요건 |
|-----|--|
| 1순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(보호자)의 자녀(대학생) •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•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다문화가족, 다자녀가구(3자녀 이상) |
| 2순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(보호자)의 자녀(대학생) |
| 3순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농식품인재(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에 재학중인 대학생) |
| 4순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특별승인자 |



내용

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(입학금, 수업료 등) 범위 내 전액 무이자 대출



방법

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



문의

한국장학재단(☎1599-2000, www.kosaf.go.kr)

자주하는 질문

농촌학자금융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. 나이제한이 있나요?

- 농촌학자금융자는 나이제한은 없으며, 대한민국 국적인 대학(교) 학부생이면 됩니다.

농촌학자금융자는 생활비 대출은 없나요?

- 농촌학자금융자는 당해 학기 등록금 대출로만 이용가능하며, 생활비 대출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타 학자금대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.

국민취업지원제도

 대상

| 필요요건 | 연령 | 가구단위 소득 | 가구원 재산 |
|-------|--------|--|--|
| I 유형 | 15~69세 | 중위소득 60% ↓ (15~34세(+병역의무이행기간 추가, 최대 3년) 청년 : 중위소득 120% ↓) | 4억원 이하 (15~34세(+병역의무이행기간 추가, 최대 3년) 청년: 5억원 이하) |
| II 유형 | | 중위소득 100% ↓ (15~34세(+병역의무이행기간 추가, 최대 3년) 청년 : 소득 무관) | 무관 |

※ I 유형은 취업경험(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)이 없는 경우 예산 상황에 따라 선별 지원 가능

 내용

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

| 구분 | 유형 | 세부 지원내용 |
|-------|-------|---|
| 취업 지원 | 공통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취업활동계획)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·의지별 수립 • (취업지원서비스)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·일경험·복지 프로그램 등* 제공 * (취업지원) 직업훈련, 일경험, 복지프로그램(생계, 의료, 금융, 돌봄서비스 등) 연계 (구직활동지원) 동행면접, 이력서·면접 컨설팅, 일자리정보 제공, 채용박람회, 취업알선 등 |
| | I 유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구직촉진수당)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50~90만 원*, 6개월 지원 * 기본 50만 원 및 부양가족(18세 이하, 70세 이상, 중증장애인) 1인당 10만 원씩 추가 • (조기취업성공수당)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조기취업 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% |
| 소득 지원 | II 유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)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15~25만 원(1회) 지원 • (훈련참여지원수당) 직업훈련 참여 및 80% 이상 출석 시 월 28.4만 원(6개월) 지원 • (참여장려수당) 고용센터 방문하여 집중취업상담·알선참여 시 1회 2만 원(3회) 지원 • (조기취업성공수당) 조건부 수급자에 한하여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 시 50만 원 1회 |
| | 공통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취업성공수당) 6개월 근속 시 50만 원, 12개월 근속 시 100만 원 지원* * I·II 유형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, 특정계층(소득무관) |

 방법

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(www.kua.go.kr)으로 참여 신청

 문의
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☎1350)

국민내일배움카드제



대상

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

※ 단,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, 연매출 4억 원 이상의 자영업자,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의 대규모기업 근로자(만 45세 미만), 월 소득 500만 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 재학생, 만 75세 이상자는 지원 제외



내용

실업·재직 등 경제활동 상태에 관계없이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~500만 원 내에서 훈련비 지원

| 구분 | | 훈련비 지원율 |
|--|-------------------|---|
| 일반실업자 등 | | 훈련비의 45~85% 지원 |
|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| II유형 중 청년 및 중장년층 | 훈련비의 45~85% 지원 |
| | I유형 및 II유형 중 특정계층 | 훈련비의 45~85% 지원 |
| 근로장려금 수급자 | | 훈련비의 45~85% 지원 |
| 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, K-디지털 트레이닝, 일반고 특화훈련,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| | 훈련비 전액 지원(1회에 한함) ※ 200~300만 원 사용으로 간주 |
|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| | 훈련비의 10%지원(취약계층은 90%지원) ※ 요건 충족 시 자부담액 전액 환급 |
| K-디지털 기초역량훈련 | | 훈련비의 90%지원(50만 원 별도 한도) ※ 요건 충족 시 자부담액 전액 환급 |

※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 과정에 참여하며 단위기간 출석률이 80% 이상인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 11만 6,000원의 훈련장려금 지급(국가훈련 및 일반고 특화훈련의 경우 월 최대 20만 원)



방법

- 카드 신청 :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(www.work24.go.kr)를 통해 신청
- 훈련과정 수강신청 :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24(www.work24.go.kr) 진단·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,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24(www.work24.go.kr)를 통해 신청 가능



문의

- 고용24(www.work24.go.kr)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☎1350)

청년내일저축계좌



대상

- (가입연령) 신청 당시 19세~34세(단, 수급자·차상위자는 15~39세까지 허용)
- (근로·사업소득) 모집 시 별도 공고
- (가구소득)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


내용

-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 원(매월 전월 23일~현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) 대비 정부지원금 10만 원(중위소득 50% 초과~100% 이하), 30만 원(중위소득 50% 이하) 정액 매칭(3년간 통장 유지, 근로활동 지속, 교육 이수, 자금사용 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)
-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근로소득공제금(생계급여 수급 청년), 탈수급장려금, 내일키움 장려금, 내일키움수익금 등) 추가 지급 가능



방법

- 온라인 신청 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신청
- 방문 신청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서 신청



문의

자산형성지원 콜센터(☎1522-3690),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
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



대상

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여성기업

※ 금융기관 신용불량거래자, 국세·지방세 체납자,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 제외



내용

창업보육공간, 창업정보, 창업기반 등 종합적인 창업지원서비스 제공

• 서울 및 지역센터 창업보육실 공간 제공

※ 입주기간 : 입주일로부터 1년(최대 3년까지 연장가능)

※ 입주비용 : (수도권) 보증금 150만 원/실, 관리비 3만 원/평/월(평균)
(비수도권) 보증금 150만 원/실, 관리비 1만 5,000원/평/월(평균)

• 여성기업 경영, 교육, 컨설팅, 국내외 마케팅, 애로상담 및 해결 지원

• 여성기업 기업환경 조성



방법

입주신청서, 사업계획서 제출 ⇨ 서류심사 ⇨ 서류심사 결과 통보 ⇨ 발표심사 ⇨ 최종결과 통보 ⇨ 입주계약 체결 ⇨ 입주



문의

•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(☎02-369-0993, www.wesc.or.kr)

•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(www.wbiz.or.kr)

여성기업 확인서 발급



대상

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



내용

여성기업의 공공구매 확대 및 정부지원사업의 우대지원을 위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



방법

- 신청방법 : 연중 수시로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(www.smpp.go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
- 현장조사 : 여성 대표자와의 면담으로 해당기업의 경영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지 확인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서면조사 및 비대면조사도 진행 가능
 - ※ 1인기업, 재신청기업(유효기간만료) 등은 서면조사 진행,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, 도서산간 지역업체 등은 비대면조사 진행
- 지원절차 :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⇨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⇨ 확인서 발급 여부 결정 결과 통보 ⇨ 온라인 확인서 출력 ⇨ 사후 관리



문의

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문의 콜센터(☎02-2038-8953, www.wbiz.or.kr)

창업기숙사 사업



대상

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, 국내 소재 대학(원)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(원)생으로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창업을 준비 또는 기 창업한 자

※ 저소득층 대학생 우대



내용

주거 및 창업 공간 제공, 창업지원 프로그램 무상지원

- (기숙사현황) 전국 5개 권역(서울, 부산, 대구, 광주, 대전), 195명 수용

| 구분 | 서울센터 | 부산센터 | 대구센터 | 광주센터 | 대전센터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위치 | 중구 장충동1가 (동대입구역) | 연제구 연산동 (연산역) | 중구 남산동 (반월당역) | 서구 농성동 (농성역) | 중구 용두동 (오룡역) |
| 정원 | 53명 | 46명 | 36명 | 32명 | 28명 |

- (지원내용) 주거 및 창업공간 제공, 창업지원 프로그램 무상지원

| 구분 | 지원내용 | |
|----------|------|--|
| 공간 지원 | 주거공간 | 사생실, 세탁실, 공용주방 등 |
| | 창업공간 | 임대형사무실, 세미나실, 멘토링실 등 |
| 창업 지원 | 창업교육 | (창업자문) 창업활동 전반에 대한 소그룹 맞춤형 자문 (창업특강) 창업 역량강화를 위한 세부분야별 전문가 특강 |
| | 네트워킹 | (관계형성) 선배창업가, 입주생, 투자자와의 창업 네트워크 형성 (경진대회) 창업가의 핵심 고민인 투자유치 실전경험 제공 |
| | 판로지원 | 온라인 홍보관 운영, 언론보도 등 판로개척 지원 |



방법

- 모집시기
 - 상반기모집 : 매년 12월 중 차년도 입주생 모집공고를 실시하여 차년도 2월 중 입주
 - 하반기모집 : 상반기 선발인원이 정원에 미달하거나 중도 퇴실 등으로 다수의 공실 발생 시 진행
- 신청방법 :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



문의

한국장학재단(☎1599-2290, www.kosaf.go.kr)

일학습병행

 대상

| 구분 | | ① 단독기업형 | ② 공동훈련센터형 |
|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참여대상 | 학습기업 | 고용보험 가입 +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기업 | 고용보험 가입 + 상시근로자수 20인 이상 기업 * 5인 이상 ~ 20인 미만 기업의 경우 강소기업 및 RSC 추천기업 등에 한해 예외로 참여 가능 (세부요건 공고문 참조) |
| | 학습근로자 | 재직 1년 이내 근로자 | 특성화고 및 일반고(직업계열) 2~3학년 전문대 최종 학년, 4년제 대학 최종학년, 재직 1년 이내 근로자 |

 내용

학습기업에서 현장훈련(OJT)이 가능하도록 학습도구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인프라, 운영 비용(훈련비,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수당 등) 지원

 방법

| 구분 | | ① 단독기업형 | ② 공동훈련센터형 |
|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신청방법 | 학습기업 | 학습기업 모집공고에 따라 HRD-Net 사이트 온라인 신청 | 공동훈련센터·기업 협약체결 후 학습기업 모집공고에 따라 HRD-Net 온라인 신청 |
| | 학습근로자 | 학습기업별 채용공고를 통해 신청 | 공동훈련센터의 모집안내에 따라 신청 |

 문의

한국산업인력공단(☎1644-8000)

해외취업 지원

대상

| 사업명 | 지원대상 |
|---------------------|---|
| 해외통합정보망 (월드잡플러스) |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|
| K-Move 스쿨 |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① 만 34세 이하로 해외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② 구인업체가 요구한 채용조건(연령 등)에 부합하는 자 ③ 최종 학교(대학교 이하) 졸업자 또는 최종학년인 자로 연수 종료 후 졸업 및 해외취업이 가능한 자 |
| 해외취업알선 | 해외취업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비자 발급이 가능한 자 |
|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| ① 만34세 이하('89.1.1이후 출생자) * 단, 군 복무 기간 인정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② 신청자 본인, 부모, 배우자, 자녀의 합산소득이 6분위 이하인 자 ③ 취업인정기준을 충족하는 자 (취업비자, 연봉 1,700만 원 이상, 단순노무직 제외 등) |
| 해외일경험지원 사업(WELL) | - 34세 이하로 해외일경험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(단, 군경력 인정 시 최대 39세까지 가능) - 대학·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로서 미취업자이거나 4년제 이상 대학의 1/2이상 마친자 - 해외 일경험에 필요한 언어능력을 갖춘 자로 참여기업 또는 운영기관 등의 선발기준에 부합한 자 - 해외 일경험에 필요한 합법적인 비자발급이 가능한 자 - 공단지원사업 '참여청년 중복참여 제한'에 해당하지 않는 자 |

내용

| 사업명 | 지원내용 |
|---------------------|---|
| 해외통합정보망 (월드잡플러스) |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해외일자리 정보, 해외 생활정보, 취업비자 등 다양한 해외취업 정보제공, 정부지원사업 안내 등을 통해 해외취업활성화 도모 |
| K-Move 스쿨 | 교육비 등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1,350만 원(운영기관 지급) ※ 1인당 최대 트랙 I(300시간 이상) 800만 원, 트랙 II(800시간 이상) 최대 1,350만 원, 대학연합(600시간 이상) 최대 1,200만 원 한도 지원 |
| 해외취업알선 | 해외취업 상담 및 일자리 알선, 근로계약 및 출국 지원 |
|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| 1인당 최대 500만 원 지급 ※ 취업 기간에 따라 3회 분할지급(취업 후 1개월, 6개월, 12개월 후) |
| 국내 해외취업센터 | 해외취업 온·오프라인 상담서비스 제공, 해외취업 상시채용관 운영(면접 지원), 해외취업 아카데미, 해외취업 전략설명회 등 해외취업 상담·지원 |

| 사업명 | 지원내용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
| 해외 K-Move 센터 | <p>해외 코트라 무역관 등을 활용하여 해외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취업알선, 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한 취업자 사후관리 및 애로 사항 해소 지원, 현지 취업 박람회 개최를 통해 취업 지원 등</p> <p>※ 현황 : 일본(도쿄, 오사카, 나고야), 미국(LA, 뉴욕), 독일(프랑크푸르트), 베트남(호치민, 하노이), 중국(베이징), 싱가포르, 인도네시아(자카르타), 호주(시드니), 캐나다(밴쿠버), 홍콩, 멕시코(멕시코시티), 중동(두바이), (사)세계한인무역협회 등 17개소</p>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해외일경험지원 사업(WELL) | <p>청년들에게 해외 일경험을 제공하여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 출국전 사전교육 + 현지 일경험 + 사후관리로 구성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사전교육</th> <th>현지 일경험</th> <th>사후관리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시간·기간</td> <td>25시간</td> <td>2~4개월</td> <td>현지 일경험 종료후 12개월</td> </tr> <tr> <td>주요 내용</td> <td>출국 전 직무·소양교육</td> <td>직무체험</td> <td>취업 지원 등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지원내용 준비금 + 수수료 + 월 체재비 지급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준비금</th> <th>수수료</th> <th>체재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지원 금액</td> <td>국가별 지원금의 70%</td> <td>국가별 지원금의 30%</td> <td>월 150만 원</td> </tr> <tr> <td>지원 시기</td> <td>현지 일경험 개시 후</td> <td>현지 일경험 종료 후</td> <td>현지 일경험 기간 중(2~4개월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국가별 지원금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미국, 영국</th> <th>캐나다, 호주, 뉴질랜드</th> <th>독일, 프랑스, 이탈리아</th> <th>말레이시아</th> <th>일본, 태국, 싱가포르, 대만, 홍콩, 베트남, 필리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300만 원</td> <td>200만 원</td> <td>150만 원</td> <td>100만 원</td> <td>50만 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구분 | 사전교육 | 현지 일경험 | 사후관리 | 시간·기간 | 25시간 | 2~4개월 | 현지 일경험 종료후 12개월 | 주요 내용 | 출국 전 직무·소양교육 | 직무체험 | 취업 지원 등 | 구분 | 준비금 | 수수료 | 체재비 | 지원 금액 | 국가별 지원금의 70% | 국가별 지원금의 30% | 월 150만 원 | 지원 시기 | 현지 일경험 개시 후 | 현지 일경험 종료 후 | 현지 일경험 기간 중(2~4개월) | 미국, 영국 | 캐나다, 호주, 뉴질랜드 | 독일, 프랑스, 이탈리아 | 말레이시아 | 일본, 태국, 싱가포르, 대만, 홍콩, 베트남, 필리핀 | 300만 원 | 200만 원 | 150만 원 | 100만 원 | 50만 원 |
| 구분 | 사전교육 | 현지 일경험 | 사후관리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시간·기간 | 25시간 | 2~4개월 | 현지 일경험 종료후 12개월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주요 내용 | 출국 전 직무·소양교육 | 직무체험 | 취업 지원 등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구분 | 준비금 | 수수료 | 체재비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지원 금액 | 국가별 지원금의 70% | 국가별 지원금의 30% | 월 150만 원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지원 시기 | 현지 일경험 개시 후 | 현지 일경험 종료 후 | 현지 일경험 기간 중(2~4개월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미국, 영국 | 캐나다, 호주, 뉴질랜드 | 독일, 프랑스, 이탈리아 | 말레이시아 | 일본, 태국, 싱가포르, 대만, 홍콩, 베트남, 필리핀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300만 원 | 200만 원 | 150만 원 | 100만 원 | 50만 원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 **방법**

| 사업명 | 신청방법 |
|------------------|--|
| 해외통합정보망 (월드잡플러스) | 월드잡플러스(www.worldjob.or.kr)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 |
| K-Move 스쿨 | <p>① 신청방법 : 월드잡플러스(www.worldjob.or.kr)로 온라인 신청 ※ 월드잡 접속(회원가입, 로그인) ⇨ 마이페이지(이력서 작성, 저장 및 공개 설정) ⇨ 지원 내용 선택(채용·모집) 해외연수 메뉴 클릭 후 희망 연수과정 선택</p> <p>② 선발방법 : 연수과정 운영기관에서 직접 선발</p> |
| 해외취업알선 | 구직등록/구인요청(구직자, 사업주) ⇨ 구인요청 사실 확인(한국산업인력공단) ⇨ 구직자 모집(한국산업인력공단) ⇨ 알선(한국산업인력공단) ⇨ 서류심사, 면접, 합격결정(사업주) ⇨ 근로계약체결(사업주) ⇨ 출국지원(한국산업인력공단) |
|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| 월드잡플러스(www.worldjob.or.kr) 접속(회원가입, 구직회원 등록) ⇨ 취업 성공(취업인정기준 부합) ⇨ 1차 지원금 신청(취업 1개월 후) ⇨ 2차 지원금 신청(취업 6개월 후) ⇨ 3차 지원금 신청(취업 12개월 후) |
| 국내 해외취업센터 | <p>직접 방문 또는 월드잡플러스(www.worldjob.or.kr)을 통해 예약 가능</p> <p>※ (서울해외취업센터)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, 금강타워 4층 (선릉역 1번 출구)</p> <p>※ (부산해외취업센터) 부산광역시 진구 중앙대로 993 롯데골드로즈 빌딩 6층 (시정역 1번 출구)</p> |
| 해외 K-Move 센터 |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해외 K-Move센터 정보 확인 |
| 해외일경험지원 사업(WELL) | 월드잡플러스에서 지원 ▶ 서류·면접 심사 ▶ 참여청년 확정 |



문의

- 한국산업인력공단(☎1644-8000)
- 월드잡플러스 누리집( www.worldjob.or.kr)

자주하는 질문

해외취업연수(K-Move 스쿨)의 사업내용과 참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
- 해외취업연수사업(K-Move 스쿨)은 국내·외 우수 교육훈련기관 및 대학 등이 연수운영기관으로 참여하여, 양질의 해외 일 자리를 선(先) 발굴 후 해외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과정 수료하여 해외취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입니다. 해외통합정보망 월드잡플러스(www.worldjob.or.kr)에 회원가입 후 연수생 모집 중인 과정을 검색하여 희망하는 연수과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연수기관의 정원규모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, 다수의 신청자가 있는 경우 연수생 선발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해외취업정보와 도움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?

- 해외통합정보망 월드잡플러스(www.worldjob.or.kr)에서 해외진출(취업, 창업, 인턴 등)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, 특히 해외취업을 위한 각 국의 구인정보, 비자, 유망직종, 취업전략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또한, 국내(서울, 부산) 에서 운영되고 있는 해외취업센터를 통해 해외취업상담 및 알선, 해외취업아카데미 등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방문 및 전화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2024년, 이렇게 달라집니다.

해외취업연수사업 참여 청년층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연수장려금이 지급*됩니다.

* 월 최대 20만 원/인, 연수기관에 선지급 후 연수기관→연수생 월별 지급(자세한 내용은 공단 문의)

해외취업정착지원금

군 복무 기간 반영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

1차 신청기한이 취업후 1개월~6개월로 변동 되었습니다.(2023년 1차 신청기한 : 취업 후 1개월~4개월)

학교 밖 청소년 자립 취업 지원 서비스



대상

15세 ~ 24세 학교 밖 청소년



내용

- 맞춤형 직업훈련
 - 직업분야별 기술훈련장 및 해당 전문직업훈련을 연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을 위한 전문성 함양
 - * 1인당 연간 최대 360만 원 직업훈련비 지원
- 인턴십, 직장체험
 - 직업훈련 수료 및 자격증 취득 후 일 경험을 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역 기업 연계로 인턴십 및 직장체험 제공
 - * 인턴십, 직장체험 제공 기업에 청소년 1인당 연간 최대 200만 원 운영비 지원
-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
 - 취업 컨설팅 프로그램, 모의면접, 이력서 코칭 등의 취업활동을 지원하고,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등록하여 취업 알선, 고용촉진장려금 등 다양한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



방법

거주 지역 시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방문 신청



문의

- 꿈드림센터 누리집(www.kdream.or.kr)
- 청소년전화(☎1388, 휴대전화는 국번+1388, www.cyber1388.kr)

행복주택 공급



대상

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 공급유형별 자격을 충족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*

* 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적용이 다름

〈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〉

| 계층 | 입주 자격 | |
|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| 일반사항 | 소득 및 자산 |
| 대학생 |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•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·복학 예정인 사람 • 대학·고등학교를 졸업·종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| (소득) 본인·부모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 이하(1인가구) (자산) 본인 총자산 10,000만 원 이하, 자동차 미소유 |
| 청년 |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• 19세~39세에 속하는 사람 •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인 | (소득)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% 이하(1인가구) (자산) 세대 내(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) 총 자산 2억 7,300만 원 이하, 자동차 3,708만 원 이하 |
| (예비) 신혼부부·한부모 가족 | • (신혼부부)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• (예비신혼부부)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• (한부모가족) 6세 이하(태아포함)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| (소득)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%(맞벌이부부 2인가구) 이하 (자산) 세대 내 총자산 3억 4,500만 원 이하, 자동차 3,708만 원 이하 |
| 고령자 | •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| (소득)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 이하(1인가구) (자산) 세대 내 총자산 3억 4,500만 원 이하, 자동차 3,708만 원 이하 |
| 주거급여 수급자 | •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자 | (소득) 세대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5% 이하 (자산)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|
| 산단 근로자 | • 무주택 세대구성원(단,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)으로서 인근(연접 시군 포함) 산업 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(예정) 중인 사람 | (소득)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% (맞벌이부부 2인가구) 이하 (자산) 세대 내 총자산 3억 4,500만 원 이하, 자동차 3,708만 원 이하 |
| 창업인 | • 무주택 세대구성원(단,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)으로서 창업활성화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, 예비창업인 으로서 • 청년(19~39세), 신혼부부, 한부모가족, 장기 근속자(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)에 해당하는 사람 | (소득)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% (맞벌이부부 2인가구) 이하 (자산) 세대 내 총자산 3억 4,500만 원 이하, 자동차 3,708만 원 이하 |

| 계층 | 입주 자격 | |
|-------------|---|--|
| | 일반사항 | 소득 및 자산 |
| 지역전략 산업 종사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무주택 세대구성원(단,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)으로서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• 청년(19~39세), 신혼부부, 한부모가족, 장기근속자(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)에 해당하는 사람 | <p>(소득)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% (맞벌이부부 2인가구) 이하</p> <p>(자산) 세대 내 총자산 3억 4,500만 원 이하, 자동차 3,708만 원 이하</p> |
| 중소기업 근로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무주택 세대구성원(단,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)으로서 •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(19~39세), 신혼부부, 한부모가족, 장기근속자(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)에 해당하는 사람 | <p>(소득)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% (맞벌이부부 2인가구) 이하</p> <p>(자산) 세대 내 총자산 3억 4,500만 원 이하, 자동차 3,708만 원 이하</p> |

 **내용**

전용면적 60㎡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~80%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~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

 **방법**

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(공인인증서 필요) 시스템 접수

- LH 누리집(www.lh.or.kr) ⇨ 인터넷청약 ⇨ 임대주택 ⇨ 분양·임대 청약속 ⇨ 행복주택 청약하기
- SH 누리집(www.i-sh.co.kr) ⇨ 인터넷청약시스템 ⇨ 인터넷 청약하기 ⇨ 행복주택 청약하기

 **문의**

- LH 집찾기 블로그(<https://blog.naver.com/lhhousingwelfare>)
- 마이홈 누리집(www.myhome.go.kr)
- LH마이홈(☎1600-1004), SH(☎1600-3456)
- 지자체는 행복주택 담당부서 등

자주하는 질문 

행복주택 청약신청을 하고 싶는데 어디서 할 수 있나요?

- LH청약센터(apply.lh.or.kr)를 통해 청약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관심 지역을 등록하면 입주자 모집일정을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 신청도 가능합니다. 청약은 입주희망지구 시행자 누리집 청약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(LH마이홈 ☎1600-1004, SH ☎1600-3456)

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와 세대를 같이 하는 대학생, 청년은 세대분리를 해야 하나요?

- 대학생, 청년은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(부모 포함)의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됩니다.

청약 시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?

-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.

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·신혼부부·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



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

| 구분 | 지원대상 | 소득 및 자산 기준 |
|-------------------|--|--|
|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| 생계급여·의료급여 수급자,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|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% 이하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(총자산 2억 4,100만 원 이하, 자동차 3,708만 원 이하) |
| 청년 매입임대 | 무주택자인 청년 (대학생, 취업준비생, 만19세~39세) |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(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) |
| 신혼·신생아 매입임대 I |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(결혼 7년 이내), 예비신혼부부, 유자녀 가구 (6세 이하 자녀), 신생아 가구 |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%(맞벌이 90%)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(총자산 3억 4,500만 원 이하, 자동차 3,708만 원 이하) |
| 신혼·신생아 매입임대 II |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(결혼 7년 이내), 예비신혼부부, 유자녀 가구(6세 이하 자녀), 혼인가구, 신생아 가구 |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(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) |
| 다자녀 매입임대 |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|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%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(총자산 3억 4,500만 원 이하, 자동차 3,708만 원 이하) |
| 고령자 매입임대 |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 |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% 이하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(총자산 2억 4,100만 원 이하, 자동차 3,708만 원 이하) |

※ 2024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(3인) : 50% 359만 9,325원, 70% 503만 9,054원, 90% 647만 8,784원, 100% 719만 8,649원, 120% 863만 8,379원




다가구주택·다세대·연립주택,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

| 구분 | 지원내용 |
|----------------|--|
|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| 시세 50%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|
| 청년 매입임대 | 시세 50% 이하 수준으로 최장 10년간 임대(혼인 시 최장 20년) |
| 신혼·신생아 매입임대 I | 시세 40%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|
| 신혼·신생아 매입임대 II | 시세 80% 이하, 최장 10년간 임대(유자녀 시 최장 14년) |
| 다자녀 매입임대 | 시세 40%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|
| 고령자 매입임대 | 시세 40% 이하 수준으로 갱신계약 횟수 제한 없음 |



방법

- 일반 저소득층, 고령자, 다자녀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 신청
- 청년, 신혼·신생아 : LH 청약센터( apply.lh.or.kr) 및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



문의

시군구청, 지방도시공사(SH ☎1600-3456, 경기도시공사 ☎1588-0466 등),
LH마이홈(☎1600-1004)

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·신혼부부·청년 등 전세임대 지원



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자

| 구분 | 지원대상 | 소득 및 자산 기준 |
|---------------|--|---|
| 일반 저소득층 전세임대 | 생계급여·의료급여 수급자,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|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(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) |
| 청년 전세임대 | 무주택자인 청년 (대학생, 취업준비생, 만19세~39세) |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(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) |
| 신혼부부 전세임대 I |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, 신생아가구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·혼인가구 |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%(맞벌이 90%)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(총자산 3억 4,500만 원 이하, 자동차 3,708만 원 이하) |
| 신혼부부 전세임대 II |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, 신생아가구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·혼인가구 |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%(맞벌이 120%) 이하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(총자산 3억 4,500만 원 이하, 자동차 3,708만 원 이하) |
| 다자녀 전세임대 |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| (1순위) 신생아 가구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, 여가부 고시 한부모가족, (2순위)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, 여가부 고시 한부모 가족, 신생아가구 (3순위)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%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(총자산 3억 4,500만 원 이하, 자동차 3,708만 원 이하) |
|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|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년소녀가정, 위탁가정, 자립준비청년, 교통사고유자녀가정, 재난유자녀가정,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 |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 이하 ※ 단, 보호종료아동은 적용하지 않음 |

※ 2024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(3인) : 50% 359만 9,325원, 70% 503만 9,054원, 90% 647만 8,784원, 100% 719만 8,649원, 120% 863만 8,379원

지원가능 주택

당첨자가 신청한 지역(특별시, 광역시, 도(道)지역)에서의 전용면적 85㎡이하 주택(단독, 다가구, 다세대, 연립,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)으로서 “전세” 또는 “보증부월세”로 계약 가능한 주택

※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85㎡ 초과 가능

내용

입주대상자가 희망 주택을 선정하면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

| 구분 | 지원내용 | | |
|---------------|--|-------|---|
| 일반 저소득층 전세임대 | 수도권 최대 1억 3,000만 원, 광역시 최대 9,000만 원, 그 외 지역 최대 7,000만 원 지원 | | |
| 청년 전세임대 | 수도권 최대 1억 2,000만 원, 광역시 최대 9,500만 원, 그 외 지역 최대 8,500만 원 지원 - 임대보증금 : 100만 원(1순위), 200만 원(2,3순위) - 월임대료 :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~2% 이하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-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| | |
| 신혼부부 전세임대 I | 수도권 최대 1억 4,500만 원, 광역시 최대 1억 1,000만 원, 그 외 지역 최대 9,500만 원 지원 - 임대보증금 : 전세금의 5%(LH, 지방도시공사 95% 지원) - 월임대료 :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~2% 이하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margin-top: 5px;"> <tr> <td style="width: 50px;">지원 예시</td> <td>수도권에서 1억 4,500만 원의 주택을 전세로 임차한 경우 임대보증금 725만 원, 월임대료 23만 원 수준</td> </tr> </table> | 지원 예시 | 수도권에서 1억 4,500만 원의 주택을 전세로 임차한 경우 임대보증금 725만 원, 월임대료 23만 원 수준 |
| 지원 예시 | 수도권에서 1억 4,500만 원의 주택을 전세로 임차한 경우 임대보증금 725만 원, 월임대료 23만 원 수준 | | |
| 신혼부부 전세임대 II | 수도권 최대 2억 4,000만 원, 광역시 1억 6,000만 원, 그 외 지역 1억 3,000만 원 - 임대보증금 : 전세금의 20% - 월임대료 :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~2% 이하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margin-top: 5px;"> <tr> <td style="width: 50px;">지원 예시</td> <td>수도권에서 2억 4,000만 원의 주택을 전세로 임차한 경우 임대보증금 4,800만 원, 월임대료 32만 원 수준</td> </tr> </table> | 지원 예시 | 수도권에서 2억 4,000만 원의 주택을 전세로 임차한 경우 임대보증금 4,800만 원, 월임대료 32만 원 수준 |
| 지원 예시 | 수도권에서 2억 4,000만 원의 주택을 전세로 임차한 경우 임대보증금 4,800만 원, 월임대료 32만 원 수준 | | |
| 다자녀 전세임대 | 수도권 최대 1억 5,500만 원, 광역시 최대 1억 2,000만 원, 그 외 지역 최대 1억 500만 원 지원 - 임대보증금 : 전세금의 2%(LH, 지방도시공사 98% 지원) - 태아가 아닌 미성년 직계비속이 2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직계비속당 0.2억원씩 대출한도 상향 | | |
|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| 20세 이하 무상지원(자립준비청년 및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은 22세 이하 무상지원), 자립지원기간(보호종결 후 5년 이내)에는 대출이율 50% 감면, 자립지원기간 초과 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출이율 적용(2년 단위 3회 계약 가능) ※ 지원기간 종료된 경우 기존주택 전세임대 유형 자격 요건 충족 시 해당 유형으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가능 | | |

청년층

방법

- 일반 저소득층,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: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 신청
- 청년, 신혼부부, 다자녀 전세임대 : LH 청약센터(apply.lh.or.kr)

문의

-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
- LH전세임대콜센터(☎1670-0002)
- 지방도시공사

에너지바우처



대상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 세대 중 노인, 영유아, 장애인, 임산부,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(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)이 포함된 세대

| 노인 | 영유아 | 장애인 | 임산부 | 중증·희귀·중증난치질환자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1959.12.31. 이전 출생자 | 2018.1.1. 이후 출생자 | 등록 장애인 |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|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[별표3], [별표4], [별표4의2]에 해당하는 자 |
| 한부모가족 | | 소년소녀가정 | | |
|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| |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) | | |

• 지원제외

- ①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
- ② 다음의 경우,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
 -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당해년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
 - 한국에너지공단의 당해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(세대)
 -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당해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(세대)



내용

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(가구당 평균 367,000원) 지원



방법

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, 복지로에서 신청(5월~12월)

※ 바우처 사용 : (여름) 7월~9월, (겨울) 10월~차년도 5월



문의

-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
- 에너지바우처 콜센터(☎1600-3190)
-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(www.energyv.or.kr)
- 복지로 누리집(www.bokjiro.go.kr)

자주하는 질문

에너지바우처는 어떻게 사용하나요?

- 하절기바우처는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, 동절기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과 실물카드(국민행복카드)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요금차감 방식은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이고, 실물카드는 직접 은행 또는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,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하거나 등유, LPG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.
- 요금차감은 지원기간 내에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(작성)된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, 국민행복카드는 지원기간 내에 결제를 완료하여야 합니다.

내집 마련 디딤돌대출(주택구입 시)



대상

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(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및 2자녀 이상 가구 7천만 원, 신혼가구 8.5천만 원) 이하, 순자산가액 4.69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



내용

- 전용면적 85㎡(읍·면지역 100㎡) 이하로 5억(신혼부부 및 2자녀 가구 6억)원 이하 주택의 구입자금을 최대 2억 5,000만 원(신혼부부 및 2자녀 가구 4억 원)까지 소득별로 연 2.45%~3.55% 저금리로 대출
- 상환기간은 10년, 15년, 20년, 30년이며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



방법

-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(KB국민·NH농협·신한·우리·KEB하나·부산·대구)에 방문 신청
- 기금e든든(enhuf.molit.go.kr)에서 온라인(모바일) 신청



문의

- 주택도시기금(☎1566-9009, nhuf.molit.go.kr)
-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(KB국민·NH농협·신한·우리·KEB하나·부산·대구)

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(전·월세 보증금 대출 시)



대상

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(2자녀 이상 가구,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, 재개발구역 이주자는 6,000만 원, 신혼부부는 7,500만 원) 이하, 순자산가액 3.45억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



내용

전용면적 85㎡(읍·면지역 100㎡) 이하로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 원 이하, 지방 2억 원 이하(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원, 지방 3억 원 이하) 전세보증금 70% 이내 최대 8,000만 원(수도권 1억 2,000만 원)까지 저금리(연 2.1~2.9%)로 대출

※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보증금 80% 이내 최대 2억 원(수도권 3억 원)



방법

-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(KB국민·NH농협·신한·우리·KEB하나·부산·대구)에 방문 신청
- 기금e든든(enhuf.molit.go.kr)에서 온라인(모바일) 신청



문의

- 주택도시기금(☎1566-9009, nhuf.molit.go.kr)
-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(KB국민·NH농협·신한·우리·KEB하나·부산·대구)

주거안정 월세대출 (순수 월세 대출 시)



대상

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전용면적 85㎡이하(읍·면지역 100㎡) 주택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부부합산 순자산가액이 3억 4,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

| 우대형 | 일반형 |
|-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무소득 취업준비생(만 35세 이하)으로 부모 연소득 6,000만 원 이하 • 취업 5년 내 사회초년생(만 35세 이하)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4,000만 원 이하 • 희망저축(키움)통장 가입자 • 1년 이내 수급사실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및 자녀장려금 수급자 • 주거급여 수급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부부합산 연소득이 5,000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|



내용

월세자금을 저금리(우대형 1.3%, 일반형 1.8%)로 매월 60만 원까지 2년간 최대 1,440만 원 대출



방법

-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(KB국민·NH농협·신한·우리·KEB하나·부산·대구)에 방문 신청
- 기금e든든(nhuf.molit.go.kr)에서 온라인(모바일) 신청



문의

- 주택도시기금(☎1566-9009, nhuf.molit.go.kr)
-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(KB국민·NH농협·신한·우리·KEB하나·부산·대구)

일반월세자금보증



대상

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 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 안정월세대출 대상자



내용

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 월세자금대출 시 대출금액의 80% 신용보증(보증료 연 0.02%)



방법

은행에 월세자금대출과 함께 신청



문의

한국주택금융공사(☎1688-8114, www.hf.go.kr)
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


대상

- 19~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
-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


내용

- 지원한도 :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(월 최대 20만 원)까지 최대 12개월(회) 동안 매월 분할 지원
 - ※ 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제외
- 지원기간 : 최대 12개월(회) 지원
 - (신청기간) '24.2.26 ~ '25.2.25.(1년간)
 - (지급기간) '24.3 ~ '26.12 내 매월 25일
(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) 현금으로 지급
 - ※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일 변동 가능(지급일자 변경, 소급지급 등)



방법

- 온라인 신청 : 복지포(www.bokjiro.go.kr)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
- 오프라인 신청 : 청년 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,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



문의
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(☎1600-0777)

긴급복지 지원제도



대상

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·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

| 구분 | 지원대상 |
|-------|--|
| 위기 상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주소득자의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,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득활동 미미(가구원 간호, 간병, 양육), 기초수급 중지, 미결정, 수도·가스 중단, 사회보험료·주택임차료 체납 등 ※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확인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혼, 단전, 교정시설 출소, 노숙,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·통합사례관리대상자·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,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|
| 소득 | <p>기준 중위소득 75%(1인 기준 167만 1,334원, 4인 기준 429만 7,434원) 이하</p> |
| 재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도시 2억 4,100만~3억 1,000만 원 이하, 중소도시 1억 5,200만~1억 9,400만 원 이하, 농어촌 1억 3,000만~1억 6,500만 원 이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실거주 주택 1개소에 한하여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• 금융재산 :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(생활준비금)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(단,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 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인 가구 기준 822만 8,000원 이하, 4인 가구 기준 1,172만 9,000원 이하 |

내용

| 구분 | 지원내용 | 지원금액 | 지원횟수 |
|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|
| 주 지 원 | 생계 (식료품비, 의복비, 냉방비 등 포함) |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(4인 기준) 183만 3,500원 | 최대 6회 |
| | 의료 | 각종 검사, 치료 등 의료서비스 | 300만 원 이내 |
| | 주거 (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) | 국가·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| 지역,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(대도시, 4인 기준) 66만 2,500원 이내 |
| | 사회복지 시설 이용 | 사회복지시설 입소또는 이용 서비스(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) |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(4인 기준) 149만 4,100원 이내 |
| 부 가 지 원 | 교육 | 가구원 내 초·중·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| 초등학생 12만 7,900원 중학생 18만 원 고등학생 21만 4,000원 및 수업료·입학금 |
| | 연료비 | 동절기(10월~3월) 연료비 지원 | 월 15만 원 |
| | 해산비 | 출산 지원 | 70만 원(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) |
| | 장제비 | 장례비 지원 | 80만 원 |
| | 전기요금 |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| 50만 원 이내 |
| 민간기관·단체 등 연계지원 등 | 사회복지공동모금회,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및 상담 등 기타 지원 | | 횟수 제한 없음 |

*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

방법

시·군·구청, 읍·면·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및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에 지원요청 또는 신고

문의

시·군·구청, 읍·면·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및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
알려드립니다

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

'22.7.1.부터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에 대해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(단, 실제 거주중인 주택 1개소에 한함)

※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: 대도시 6,900만 원, 중소도시 4,200만 원, 농어촌 3,500만 원

2024년, 이렇게 달라집니다.

지원금액 인상

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 상향(5.47%)에 따른 생계지원 금액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주거·사회복지시설 이용·교육 지원 및 연료비 인상

자주하는 질문

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나요?

-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. 본인, 가족, 친족,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.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로 문의하세요.

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



대상

위기가구로 발굴된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보건·복지 등 공공 및 민간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가구



내용

복지·보건·고용·주거·교육·신용·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·제공

※ 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적절한 민간자원 연계가 어려운 경우 대상가구에 생활지원비, 진단비 및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



방법

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 신청



문의

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
여성긴급전화 1366



대상

가정폭력, 성폭력, 성매매, 스토킹, 교제폭력,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폭력으로 긴급한 구조·보호 또는 상담이 필요한 여성



내용

- 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상담, 동행지원 등 현장상담 서비스 지원
- 상담소, 보호시설, 경찰, 병원, 법률기관 등 관련기관과 연계 지원
- 피해자 및 동반자녀에게 임시보호를 위한 긴급피난처 제공



방법

여성긴급전화, 내방·방문, 사이버상담을 통한 위기상담 ⇨ 현장상담, 긴급피난처 서비스 제공 ⇨ 관련기관 연계조치



문의

- 여성긴급전화(☎1366)
- 여성폭력 사이버상담(www.women1366.kr)

국가건강검진제도

 대상

| 구분 | 지원대상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---|---|---|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|
| 일반건강검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건강보험가입자 : 지역세대주, 직장가입자, 20세 이상 세대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 : 20~64세 지역세대주 및 세대원 (66세 이상은 의료급여생애전환기 시행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암검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위암 : 40세 이상의 남녀(2년 1회) 간암 : 40세 이상의 남녀 중 간암발생고위험군* 해당자(6개월 1회) * 간경변증, B형 간염 항원 양성, C형 간염 항체 양성,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대장암 : 50세 이상의 남녀(1년 1회) 유방암 : 40세 이상의 여성(2년 1회) 자궁경부암 : 20세 이상의 여성(2년 1회) 폐암 : 54세~74세 남녀 중 고위험군* 해당자(2년 1회) * 30갑년(하루평균 담배소비량(갑)×흡연기간(년))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자 ※ 폐암 발생 고위험군으로 확인되어 국가폐암검진을 받았던 자는 검진 후 금연하더라도 금연 15년 이내, 74세까지 폐암검진 대상자 포함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영유아건강검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- 월령별로 총 8회(구강검진 4회) 검진 실시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(1차) 생후 14~35일</th> <th>(2차) 4~6개월</th> <th>(3차) 9~12개월</th> <th>(4차) 18~24개월</th> <th>(5차) 30~36개월</th> <th>(6차) 42~48개월</th> <th>(7차) 54~60개월</th> <th>(8차) 66~71개월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건강검진</td> <td>○</td> <td>○</td> <td>○</td> <td>○</td> <td>○</td> <td>○</td> <td>○</td> <td>○</td> </tr> <tr> <td>구강검진</td> <td>-</td> <td>-</td> <td>-</td> <td>○ (18~29)</td> <td>○ (30~41)</td> <td>○ (42~53)</td> <td>○ (54~65)</td> <td>-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구분 | (1차) 생후 14~35일 | (2차) 4~6개월 | (3차) 9~12개월 | (4차) 18~24개월 | (5차) 30~36개월 | (6차) 42~48개월 | (7차) 54~60개월 | (8차) 66~71개월 | 건강검진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구강검진 | - | - | - | ○ (18~29) | ○ (30~41) | ○ (42~53) | ○ (54~65) | - |
| 구분 | (1차) 생후 14~35일 | (2차) 4~6개월 | (3차) 9~12개월 | (4차) 18~24개월 | (5차) 30~36개월 | (6차) 42~48개월 | (7차) 54~60개월 | (8차) 66~71개월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건강검진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구강검진 | - | - | - | ○ (18~29) | ○ (30~41) | ○ (42~53) | ○ (54~65) | -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학생건강검진 | 초등학교 1학년부터 3년 주기 (초등학교 1·4학년생, 중학교 1학년생, 고등학교 1학년생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| 9~18세 학교 밖 청소년(3년 주기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내용

| 구분 | 목표질환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|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|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|
| 일반건강검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통 : 비만, 시각·청각이상, 고혈압, 폐결핵, 신장질환, 빈혈, 당뇨병 등 • 성·연령별 : 이상지질혈증, B형간염, 골다공증, 우울증, 인지기능장애 등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성·연령별 검사항목</th> <th>실시시기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총콜레스테롤</td> <td rowspan="4">남성 24세 이상, 여성 40세 이상 4년마다</td> </tr> <tr> <td>HDL콜레스테롤</td> </tr> <tr> <td>중성지방</td> </tr> <tr> <td>LDL콜레스테롤</td> </tr> <tr> <td>B형간염</td> <td>40세</td> </tr> <tr> <td>골밀도검사</td> <td>54, 66세(여성)</td> </tr> <tr> <td>인지기능장애</td> <td>66세 이상 2년 1회</td> </tr> <tr> <td>정신건강검사(우울증)</td> <td>20, 30, 40, 50, 60, 70세 (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)</td> </tr> <tr> <td>생활습관평가</td> <td>40, 50, 60, 70세</td> </tr> <tr> <td>노인신체기능</td> <td>66, 70, 80세</td> </tr> <tr> <td>치면세균막검사</td> <td>40세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성·연령별 검사항목 | 실시시기 | 총콜레스테롤 | 남성 24세 이상, 여성 40세 이상 4년마다 | HDL콜레스테롤 | 중성지방 | LDL콜레스테롤 | B형간염 | 40세 | 골밀도검사 | 54, 66세(여성) | 인지기능장애 | 66세 이상 2년 1회 | 정신건강검사(우울증) | 20, 30, 40, 50, 60, 70세 (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) | 생활습관평가 | 40, 50, 60, 70세 | 노인신체기능 | 66, 70, 80세 | 치면세균막검사 | 40세 |
| | 성·연령별 검사항목 | 실시시기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총콜레스테롤 | 남성 24세 이상, 여성 40세 이상 4년마다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HDL콜레스테롤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중성지방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LDL콜레스테롤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B형간염 | 40세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골밀도검사 | 54, 66세(여성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인지기능장애 | 66세 이상 2년 1회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정신건강검사(우울증) | 20, 30, 40, 50, 60, 70세 (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생활습관평가 | 40, 50, 60, 70세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노인신체기능 | 66, 70, 80세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치면세균막검사 | 40세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암검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위암 : 위내시경검사 (단,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 선택적 시행) • 간암 : 간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병행 • 대장암 : 1단계 분변잠혈검사 양성 판정시, 2단계 대장내시경검사 • 유방암 : 유방촬영술 • 자궁경부암 : 자궁경부세포검사 • 폐암 : 저선량 흉부CT 검사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영유아건강검진 | 성장·발달이상, 비만, 시각·청각이상, 모유수유, 영양결핍(과잉), 영아돌연사 증후군, 안전사고, 대소변가리기, 개인위생, 사회성 발달, 취학전준비, 전자 미디어노출, 치아발육상태, 치아우식증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학생건강검진 (교육부) | 근·골격 및 척추, 시력측정, 안질환, 청력, 구강상태 등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(여성가족부) | 비만, 시각·청각이상, 고혈압, 신장질환, 간질환(B형·C형간염), 성매개질환 등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방법
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 후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

문의

- 국민건강보험공단 ☎1577-1000)
-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(www.nhis.or.kr)

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



대상

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(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, E 해당자) 중 18세 이상 전체 원발성 암환자



내용

암환자에게 연속 최대 3년 간 의료비 지원(연 최대 300만 원, 급여/비급여 구분 없음)



방법

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



문의

- 관할 보건소
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- 국립암센터 암환자 의료비지원(☎031-920-2029)
- 국가암정보센터(cancer.go.kr)

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



대상

지역 주민



내용

- 중증 정신질환자 대상 사례관리, 심층사정평가, 상담 및 사회복귀 지원
- 정신응급상황 위기개입 및 상담
-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치료연계, 일반 정신건강 증진사업 제공



방법

해당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 후 신청



문의

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-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(☎1577-0199)

자주하는 질문 

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(☎1577-0199)는 어떤 일을 하나요?

- 담당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이 자살위기 상담 등 정신건강 상담, 정신건강 정보 제공, 정신의료기관 안내 등을 합니다.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는 시군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결되고,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미설치된 곳은 보건소의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연결됩니다. 야간 및 주말, 휴일은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착신 전환하여 연결되기 때문에 365일, 24시간 전국 어디에서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(바우처)



대상

19-34세 청년

* 출생연도 기준, 1990년생~2005년생, 소득기준 없음



내용

전문상담서비스 및 사전·사후검사 총 10회 제공(재판정 시 연장 가능)

* 하반기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으로 개편 추진



방법

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 신청



문의

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
법률구조 제도



대상

- 중위소득 125%(4인 기준 716만 2,391원) 이하인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
- 중위소득 150%(4인 기준 859만 4,870원) 이하 농·어업인



내용

민사·가사·행정·헌법소원심판 등의 소송대리, 소송서류 무료작성(단, 1,000만 원 이하의 간단하고 명백한 사건), 개인회생·파산 신청사건, 형사 무료변호 지원

| 중위소득 기준 | 대상자구분 | 소송비용 |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
| | | 변호사 보수 | 소송 비용 |
| 125% 이하 | 국민 | 유료 | 유료 |
| | 청년미취업자 및 대학생 | 무료 | 무료 |
| |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| 무료 | 유료 |
| | 전시납북자가족 | 무료 | 무료 |
| | 영세담배소매인 | | |
| | 가정폭력·성폭력피해자(외국인여성포함) | | |
| | 미혼부 | | |
| | 소상공인 | | |
| | 북한이탈주민 | | |
| | 범죄피해자(재산) | | |
| | 소액임차인 | | |
| | 국가유공자 | | |
| | 보훈보상대상자 | | |
| | 독립유공자 | | |
| | 5·18민주유공자 | | |
| | 참전유공자 | | |
| | 고엽제후유의증, 2세환자 | | |
| | 특수임무유공자 | | |
| |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| | |
| | 학교폭력피해자 | | |
| | 경찰·소방공무원 | | |
| | 예술인 | | |
| |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(보이스피싱 피해자 등) | | |
| | 의료사고피해자 | | |
| | 국내거주 외국인 | | |
| | 범죄피해자(신체) | | |
| |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| | |
| | 저소득재해근로자 등 | | |
| | 선원(국내거주외국인포함) | | |
| | 한부모가족(취약계층) | | |
| 가족관계미등록자 | | | |
| 소년소녀가장 | | | |
| 보호대상아동 | | | |

| 중위소득 기준 | 대상자구분 | 소송비용 |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
| | | 변호사 보수 | 소송 비용 |
| | 한부모가족(양육, 인지) | | |
| | 기초생활보장수급자 | | |
| | 의사자 유족, 의상자 가족 | | |
| | 결혼이민자·귀화허가자 | | |
| | 개인회생/파산·면책신청대상자 | | |
| | 저소득 교통사고 피해자 | | |
| 150%이하 | 농업인·어업인 | | |
| 소득기준 예외 | 차상위계층 | | |
| | 임금피해근로자(국내거주외국인포함) | | |
| | 임금피해선원(국내거주외국인포함) | | |
| | 법원소송구조사건 피구조자 | | |
| | 국선대리인 선정사건의 청구인 | | |
| | 불법사금융피해자 | | |
| | 가습기살균제피해자 | | |



방법

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, 출장소, 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



문의

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, www.klac.or.kr)

알려드립니다



공단에서 도와드리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민사사건(예 : 임금, 대여금, 손해배상 등)과 가사사건(예 : 이혼, 재산분할 등)
-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
- 채무자대리인 사건, 개인회생 및 파산·면책사건
- 주택·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사건
- 형사사건(예 : 절도, 강도 등)
- 성범죄·성폭력범죄 피해자,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선임 특례 사건
- 운전면허정지·취소,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
-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사건

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



대상

고용부가 지원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근로자, 실업자, 무급휴직자, 피보험자인 자영업자

※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

※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(특별고용지원업종, 고용위기지역, 특별재난지역은 소득 요건 없음, 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훈련,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(KDT)에 참여하는 경우 중위소득 100% 이하)



내용

월 단위 200만 원(1인당 1,000만 원) 한도*, 연리 1%(신용보증료 별도), 최대 3년 거치 최대 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으로 대부

*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월 단위 200만 원(1인당 총 2,000만 원) 한도



방법

대부신청서 및 신용보증신청서 접수(근로복지공단) ⇨ 결정 확인서 및 신용보증서 발행(근로복지공단) ⇨ 대부대행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 체결(대부대상자)

※ 대부신청서는 내방 또는 온라인(근로복지넷) 접수



문의

- 근로복지공단 콜센터(☎1588-0075)
- 근로복지넷(🌐 welfare.comwel.or.kr)

알려드립니다

이 사업은 신용보증지원제도를 통해 운영하는 사업으로, 신용보증대상*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.

* 신용보증대상 : 아래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신청자

한국신용정보원에 '신용도판단정보' 또는 '공공정보'가 등록된 사람, 외국인, 재외동포,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구상금 미납액이 남아 있거나, 부정대부 신청·용도의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

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



대상

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(무담보 5억, 담보 10억)로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



내용

채무자의 상황(연령, 연체기간, 소득 등)에 따라 상환기간 조정(최장 10년), 이자율 조정, 이자 감면, 원금 감면 등을 지원

※ 지원제도 : 연체 전 채무조정(신속채무조정), 이자율 채무조정(프리워크아웃), 채무조정(개인워크아웃)

| 구분 | | 지원내용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|
| 연체전 채무조정 (신속채무 조정) | 지원대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체기간 30일 이하 -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(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,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) -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% 미만 - 실업/휴직/폐업/질병/신용도하락 등이 발생한 채무자 중 '연체전 채무조정(신속채무조정)' 없이 정상적인 채무상황이 어려운 채무자 |
| | 지원내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체이자 감면 -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- 약정이자율 인하(최고 15%, 카드채무 10%) |
| 이자율 채무조정 (프리워크 아웃) | 지원대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-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(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,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) -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% 미만 |
| | 지원내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체이자 감면 -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- 채무자 상환능력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~70%까지 인하 (최고 8%, 최저 3.25%) |
| 채무조정 (개인워크 아웃) | 지원대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체기간 90일 이상 -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(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,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) -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% 미만 |
| | 지원내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 감면 - 채무자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 0~30%, 상각채권 원금 20~70% 범위 내에서 감면 - 최장 8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|



방법

-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 신청
-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(cyber.ccrs.or.kr)를 통해 인터넷상담 신청
- 신용회복위원회 모바일 앱 설치 후 상담 신청



문의

-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
-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(cyber.ccrs.or.kr)

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



대상

금융교육을 희망하는 금융 취약계층 등

※ 단, 교육 대상 인원 20명 이상 시 개설 가능



내용

| 교육주제 | 교육내용 | 교육방식 |
|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|
| 재무설계 | 재무설계의 필요성과 재무설계 방법 | 방문·온택트· 온라인 교육 |
| 저축과소비 | 금융상품 선택법과 합리적인 소비관리 ※ (체험형 교육)청소년 체험형 보드게임, 발달장애인 대상 워크북 | |
| 부채관리 | 대출 시 유의점 및 대출과 신용카드 활용법 | |
| 신용관리 | 신용관리의 필요성 및 신용관리 방법 | |
| 금융사기예방 | 불법추심, 사금융, 금융사기 예방법 ※ (체험형 교육)고령층 대상 금융사기예방 게임북(노다지) | |
| 서민금융제도 이해 | 서민금융제도 및 채무자 구제제도 | |
| 생활·복지 | 가계 재무위기 지원제도 및 복지제도 | |
| 창업금융 | 창업관련 정보 및 창업금융 제도 | |
| 디지털 금융교육 | 고령층 대상 디지털 금융소외 예방을 위한 역량 강화교육 | |



방법

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누리집(edu.kinfa.or.kr)에서 신청

- 방문교육 :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강사 방문
- 온택트교육 : 화상강의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금융교육
 - 공개교육 : 정해진 교육일정, 주제로 교육 신청
 - 기관교육 : 희망하는 일정, 주제를 자유롭게 신청



문의

서민금융콜센터(☎1397)

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



대상

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현역병 입영통지 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,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,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 된 사람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



내용

가족의 부양비, 재산액, 월수입액이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 병역감면 처분(전시근로역), 대체복무요원은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처분




방법

거주지 지방병무청 방문 또는 우편 신청



문의

-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(☎1588-9090)
- 병무청 누리집( www.mma.go.kr)
 - 병역이행안내-병역감면-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

온가족보듬사업



대상

한부모가족, 다문화가족, 1인 가구, 노부모 부양가족, 손자녀 돌봄 조부모, 청소년(한)부모 등 가족기능 회복 및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가족 및 긴급위기가족



내용

• 전국 가족센터(220개소)를 통해 가족상담, 사례관리 기반 맞춤형 가족서비스 지원

| 구분 | 주요내용 |
|------------------|---|
| 가족상담 | 부모-자녀상담, 부부상담, 이혼전·후상담 등 |
| 사례관리 | 대상자 정책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- 만15세 이하 자녀 대상 학습정서지원 - 만18세 이하 (손)자녀 양육 가족 및 노부모 부양가족 대상 생활도움지원 - 청소년(한)부모 대상 심리상담 및 법률지원 제공 - 미혼모·부 출산·양육지원 - 지역사회 자원 연계 |
| 교육·문화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|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·문화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지원 -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지원 - 노부모 부양가족, 손자녀 돌봄 조부모 대상 양육 및 자기돌봄 교육 - 원가정 회복지원, 면접교섭을 위한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|
| 긴급위기지원 | 긴급위기 상황을 직면한 가족에 대한 심리·정서지원 및 긴급돌봄 등 지원 - 심리·정서지원, 긴급돌봄지원, 1인가구 병원동행 - 전문상담사 및 심리치료 연계 |



방법

시·군·구 가족센터에 신청



문의

가족센터(☎1577-9337, www.familynet.or.kr)

2024년, 이렇게 달라집니다.

가족희망드림,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 패키지,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이 '온가족보듬사업'으로 통합되었습니다.

펴낸곳

보건복지부

한국사회보장정보원

보건복지부

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

사회보장조정과

한국사회보장정보원

사회보장정보본부

범부처정보관리부

인쇄 2024년 4월 30일

디자인 케이엠커뮤니케이션(주)

발간등록번호 11-1352000-001921-10

※ 이 책에 사용된 이미지는 공공의 목적 이외(상업용·판매용)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